

의안 번호	646
----------	-----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제출 일자 : 2008. 9. 9(화)
- 제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08. 9. 16(화)
- 위원회심사 : 2008. 9. 23(화)

## 2. 제정이유

기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분야가 2007년 9월 28일 법률 제8014호에 의거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분뇨의 처리(안 제3조)
  -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시설로 관할구역 분뇨처리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안 제4조)
  - 제외지역 지정시 지정사유 명시하여 고시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안 제5조)

- 허가시 영업대상 및 필요한 조건 정할 수 있음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안 제6조)

- 시설소유자(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
-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안내서 및 촉구서 작성·발송가능

○ 분뇨수집·운반의 대행(안 제7조)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 대행계약 체결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

○ 분뇨수거 및 청소 결과보고(안 제8조)

- 대행업자는 매월 분뇨수거 및 청소증명서 첨부하여 실적보고

○ 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안 제9조)

- 대행업자는 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 발견 시 구청장에게 신고

○ 수수료의 징수(안 제10조)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 조례안 【별표1】

○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11조)

- 부과기준은 하수도법 영 별표8에 따름
-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 보고·검사(안 제12조)

- 연 1회이상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4.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41조

#### 5. 참고사항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08. 6. 30 ~ 7. 21)

##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분야가 2007년 9월 28일 법률 제 8014호에 의거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을 새로 제정된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조문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으나 다만,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징수한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기존 조례안에 없는 내용으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